

법무매거진

내년 6월부터 '만 나이' 통일... 민법 등 개정안 법사위 통과



-국회 법사위, 민법·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



앞으로는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최대 2살까지 어려워지는 '만 나이'로 통일된다.

지난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.

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법령상과 행정 분야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이 기준인 만 나이가 적용될 예정이다. 1살이 되기 전인 경우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.

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 방식이 모두 쓴다. 세는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,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어 왔다.

반면 만 나이는 태어난 날 0살로 시작해 1년 후인 다음 해 생일에 1살이 되는 계산 방법이다.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된다.

현행법에서는 세금·의료·복지 등 행정 분야 기준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데,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쓰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.

한편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.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.